

우리 가정에 필요한 따스한 햇살이 되길

- 가정폭력사건 조건부 기소유예 -



글 : 지영경 _ 부산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가정폭력상담소 가정보호 사건 행위자 수탁 기관 조건부 기소유예 통해 가정폭력에 적극적 대처

2004년에는 하반기부터 여성부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프로그램 사업을 일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성부에서는 중앙과 지방법원 가정지원과 검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 된 가정폭력행위자들이 원활하게 상담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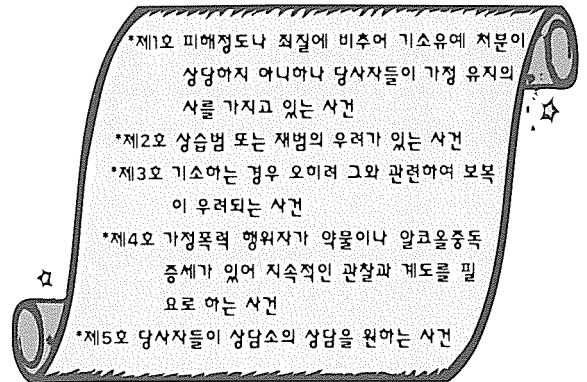
그에 따라 부산지역의 경우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부터 가정폭력상담소를 가정보호사건 행위자의 수탁 기관(상담)으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검찰 또한 가정폭력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서 가정폭력행위자들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 것이다.

사회복지사 포함된 프로그램 연구위원 활동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관심과 참여 중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는 가정폭력 건 중에서도 단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는데 그 대상이 되

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서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개별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부부집단상담, 부부캠프에 참가하게 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부인과 함께 상담을 받아 문제해결 및 갈등해소, 부부대화법, 분노조절, 행동변화계획, 평등한 부부되기 등의 내용들에 함께 하게 된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이하 본상담소)에서는 1996년 이후부터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면서 프로그램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프로그램 연구 및 실행을 담당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여성전문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상담원들로 구성이 되어져있고 또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담조건부기소유어나 법원을 통한 행위자 상담위탁이 늘어나고 활성화되기 위해 서는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이제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정 폭력 등의 사건을 사회복지사가 인지했을 경우 위기상황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인근의 관련 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어서 클라이언트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가정폭력을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때 사회복지사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
 부산 동래구 명륜1동 533-230 울곡빌딩 10층 1006호
 051-558-8832~3(상담), 051-558-3932(팩스검음)

 **알** 아 둡 시 다

▲ 가정폭력특별법이란?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일반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안정보다는 가정을 뿌리채 흔들어놓을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행위자의 성행의 교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그 특색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검찰, 법원의 각 단계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을 가능케 하였다는 것이다

▲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절차

신고 → 경찰 : 조사 후 송치(검찰에 임시조치 신청, 응급조치)

→ 검찰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종결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공소제기

→ 법원 : 재판 후 판결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 법원 : 조사 심리 :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

(임시조치결정 : 검찰의 청구에 의하거나 사건송치 후 법원의 직권에 의해)

※ 사법경찰관 : 가정폭력사건 신고, 고소, 접수(폭력제지 등 응급조치, 가해자는 경찰관이 동행)

조사 후 검찰 송치, 검찰에 임시조치 신청



검찰 : 법원에 공소제기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퇴거 격리, 접근 금지, 위탁, 유치장 유치)



법원 : 가정폭력사건의 유, 무죄 판결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불처분결정 : 피해자의 고소취소, 처벌불원 등 보호처분 :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